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 청 북 도 의 회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**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송미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10월 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5일

3. 제안이유

- 도내 균형발전 차원의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에 따른 “성장촉진지역”에서 「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」에 따른 “균형발전 촉진지역(저발전 지역)”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
-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균형발전 차원의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“성장촉진지역”에서 “균형발전 촉진지역”으로 확대함(안 제2조제9호, 안 제25조, 안 제30조)
-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14조)
(현행) 2021년 12월 31일 → (개정) 2026년 12월 31일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노학)

가. 제출배경

- 대도시권에 일자리와 산업이 집중됨으로써 지역발전의 불균형 및 인구 소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지역 산업기반 마련 및 주민소득 제고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
- 이에, 현행 조례에서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6조에 따른 성장촉진 지역*에 대하여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나
- 이를, 「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」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(저발전지역**)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도내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* 성장촉진지역(5) : 괴산군, 단양군, 보은군, 영동군, 옥천군

** 저발전지역(7) : 제천시, 증평군, 괴산군, 단양군, 보은군, 영동군, 옥천군

※ 현행 조례에서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

- 도비 보조금 분담비율 10% 우대 지원 : 40%(그 외 지역 30%, 제천 40%)
- 오피수 처리비용 3년간 최대 3억원 지원
- 물류비용 3년간 최대 15억원 지원
- 대규모 투자기업의 정주여건 지원을 위해 투자환경개선시설 투자 시 사업비 일부 지원
- 투자진흥기금으로 성장촉진지역의 산단을 매입하여 투자기업에게 임대 지원 사업 추진

나. 주요 검토내용

- 안 제2조제9호는 “균형발전 촉진지역”에 대하여 정의함
 - 도내 균형발전 차원의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「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」가 지원하는 지역과 연계하여 범위를 넓히되
 - 「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」에서 사용하는 “저발전지역”이란 용어를 “균형발전 촉진지역”으로 순화하여 당해 조례에 정함

○ 안 제25조(공장운영비 등 지원), 안 제30조(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)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지원 대상 지역을 “성장촉진지역(5개)”에서 “균형발전 촉진지역(7개)”으로 확대함

○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5년(2021년 → 2026년까지)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함

※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(21.8.24.)

[기금의 존속기한]

<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>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기업유치를 위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“성장촉진지역”에서 “균형발전 촉진지역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,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도내 저발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

○ 또한, 기업유치 불리한 지역의 기업 지원,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, 임대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기금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바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(2026.12.31.)은 적절하다고 사료됨